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구 미 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제출년월일 : 2021.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

화물자동차 도심지 주차가 불법 주차 문제 개선 및 화물운수 종사자 주차 편의 증진,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통한 산업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 필요

○ 옥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 중심지 기능 강화 및 배후마을에 대한 복지, 문화 서비스 공급 거점을 마련하고 낙후되고 취약한 환경을 새롭게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한 정주 여건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득재산】

□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

○ 위 치 : 임은동 5-3 외 10필지

• 임은동 5-3, 5, 5-5, 28-3, 28-5, 산2-7, 산1-6, 산1-7, 산2-3, 5-4, 763-31

○ 대 상 : 토지 45,566㎡(13,784평), 건물(관리동) 1식

○ 사업기간 : 2021 ~ 2024년(4년간)

○ 사 업 비 : 127억원(토지매입비 67억원, 공사비 60억원)

○ 사업내용 : 주차대수 210대 정도(화물 150, 승용 60), 관리동 등

○ 기준가격 : 토지 3,538백만원(공시지가)

건물 900백만원(건축비)

□ 옥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20 ~ 2023년

○ 사업내용

- 주아령활력센터조성 : 주아령활력센터(짚질방, 빨래방), 게이트볼장, 광장
- 주아령동아리방조성 : 녹색농촌체험회관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 주아령안전안길조성 : 행복쉼터, 무선방송시스템 1식

< 주아령 활력센터, 게이트볼장 >

○ 위 치 : 옥성면 주아리 142-3번지 외 5필지

○ 대 상 : 토지 2,055㎡(623평)

건물(주아령활력센터) 지상 1층, 연면적 376㎡

건물(게이트볼장) 지상 1층, 연면적 530㎡

○ 기준가격 : 토지 62백만원(공시지가)

건물(주아령활력센터) 1,043백만원(건축비)

건물(게이트볼장) 385백만원(건축비)

< 행복쉼터 >

○ 위 치 : 옥성면 주아리 309-1번지 외 1필지

○ 대 상 : 737㎡(223평)

○ 기준가격 : 토지 39백만원(공시지가)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22건	49,264 1식	5,967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19건	48,358	3,639
	2. 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건	906 1식	2,328

취득 및 처분 재산목록(총괄)

회계명 : 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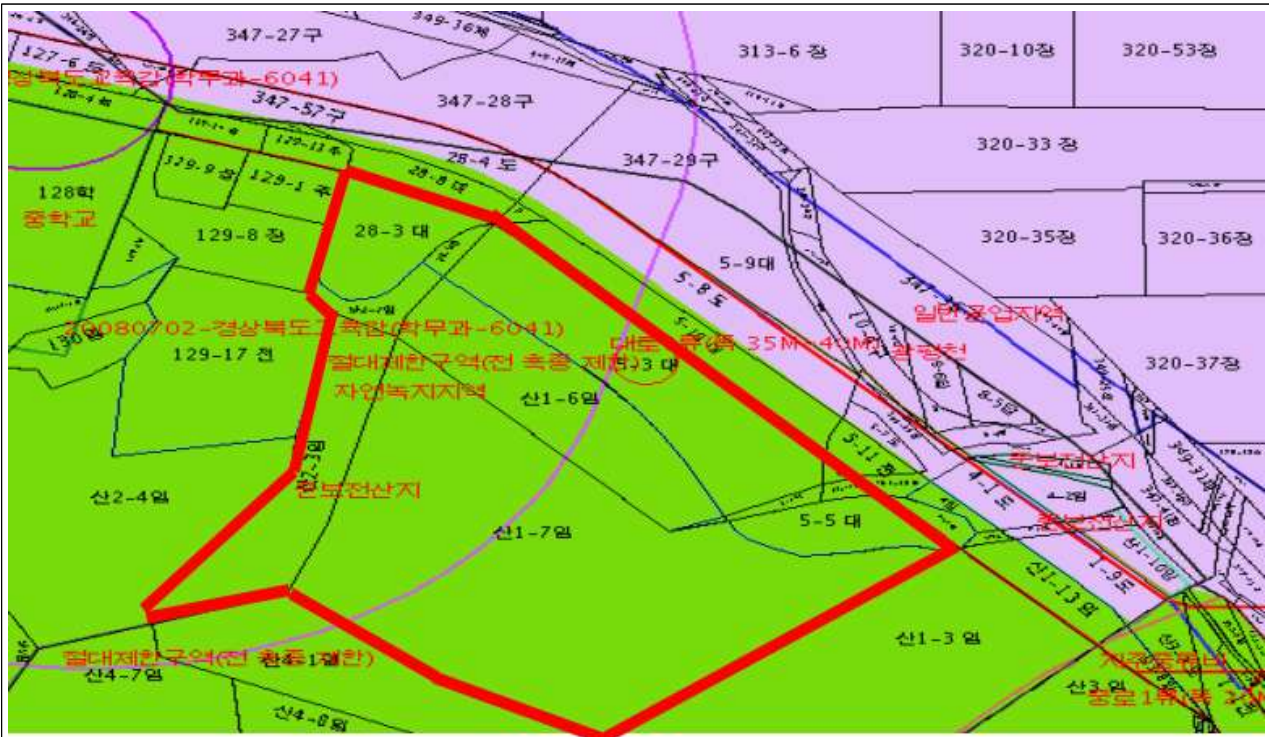
(단위 : m², 백만원)

구분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매각 시 기	사 유	재 산 소유자	비고
	재산구분	소재지	수량(m ²)					
총계			49,264 1식	5,967				
소계			49,264 1식	5,967				
취득	토지	임은동 5-3 외 10필지	45,566	3,538	2021~ 2025년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기재부) 국(건설부)	매입
	건물	임은동 5-3	1식	900	2021~ 2025년	〃		신축
	토지	주아1리 142-3	572	17.3	2021년	육성면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주아령활력센터 게이트볼장)	황성국	매입
	〃	주아1리 143-5	155	4.7	〃	〃	황성주	〃
	〃	주아1리 349-5	516	15.6	〃	〃	신동석	〃
	〃	주아1리 965-1	453	13.7	〃	〃	국(건설부)	〃
	〃	주아1리 965-47	96	2.9	〃	〃	국(건설부)	〃
	〃	주아1리 973	263	7.8	〃	〃	국(건설부)	〃
	〃	주아1리 309-1	390	20.6	〃	육성면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행복쉼터)	황의철	〃
	〃	주아1리 310-7	347	18.4	〃	〃	육종문	〃
	건물	주아리 142-3 일원	376	1,043	2023	육성면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주아령활력센터)		신축
	〃	주아리 142-3 일원	530	385	2023	육성면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게이트볼장)		신축

위 치 도

□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

○ 소재지 : 구미시 임은동 5-3 외 10필지



□ 옥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소재지 : 구미시 옥성면 주아리 일원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②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② ~ ⑤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소관 실·과		회 계 과
입 안 자	과 장	지 영 목
	담 당	박 정 희
	담 당 자	유 동 선 (480-5072)